한경훈 / 4월 / 기초GS Plus / 16회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가독성 평점	응시인원
556213	11	8.5	15.5	10	45	1	1.54%	4	65
556282	11	9.5	15	8	43.5	2	3.08%	4	
556298	12.5	8	14.5	8	43	3	4.62%	4	
557035	14	8	14.5	6	42.5	4	6.15%	4	
556312	12.5	8.5	12	9	42	5	7.69%	5	
556383	11.5	8.5	14.5	7	41.5	6	9.23%	4	
555796	10.5	9.5	16	5	41	7	10.77%	4	
556203	11.5	6	14	9	40.5	8	12.31%	4	
556214	14.5	8	13	4.5	40	9	13.85%	4	
556399	13	9.5	13	4	39.5	10	15.38%	5	
556633	11	10.5	9.5	8.5	39.5	10	15.38%	5	
556380	11.5	7.5	12.5	7.5	39	12	18.46%	5	
556043	8.5	10	13	7	38.5	13	20.00%	4	
556358	12.5	9.5	10.5	6	38.5	13	20.00%	4	
556360	15	10	12.5	0	37.5	15	23.08%	4	
556329	11.5	8	11.5	6	37	16	24.62%	4	
556219	8.5	8.5	12.5	7	36.5	17	26.15%	4	
559375	11	6.5	10.5	8.5	36.5	17	26.15%	4	
554633	9.5	9.5	12.5	4	35.5	19	29.23%	5	
556412	5	9.5	15.5	5.5	35.5	19	29.23%	4	
556423	10	9	11.5	5	35.5	19	29.23%	4	
559560	14.5	8	8.5	4.5	35.5	19	29.23%	5	
556236	10.5	8	10.5	5.5	34.5	23	35.38%	4	
556408	7.5	8	10.5	8	34	24	36.92%	4	
556431	9	8.5	10.5	5.5	33.5	25	38.46%	4	
556436	9.5	7.5	10.5	6	33.5	25	38.46%	4	
556205	9.5	9.5	8	6	33	27	41.54%	4	
556397	9.5	8	12	3.5	33	27	41.54%	4	
556635	10.5	5	13	4.5	33	27	41.54%	4	
556305	9.5	5.5	11.5	6	32.5	30	46.15%	4	
556434	11	6	10	5.5	32.5	30	46.15%	4	
559826	7.5	10.5	8	6.5	32.5	30	46.15%	4	
556776	8	7	11	5	31	33	50.77%	4	
556324	9	7.5	10.5	3.5	30.5	34	52.31%	5	
556382	11.5	8.5	5.5	4.5	30	35	53.85%	4	
554589	10.5	6.5	10.5	2	29.5	36	55.38%	4	
554737	12	9	8.5	0	29.5	36	55.38%	5	
556948	10	11	7.5	0	28.5	38	58.46%	4	
556842	7	6	10.5	4.5	28	39	60.00%	4	
559611	9	8	10.5	0.5	28	39	60.00%	4	
556071	11	5.5	9.5	1.5	27.5	41	63.08%	4	
556499	9	7	11	0	27	42	64.62%	4	
556483	10	4	8.5	4	26.5	43	66.15%	4	
556479	10	8.5	6.5	0	25	44	67.69%	5	
556409	9	8	5.5	2	24.5	45	69.23%	5	
556626	7.5	6.5	9	0	23	46	70.77%	5	
556917	11.5	8.5	2.5	0	22.5	47	72.31%	5	
556272	2	9	6.5	4.5	22	48	73.85%	4	
556376	10.5	8.5	3	0	22	48	73.85%	5	
555488	8.5	5	6.5	1.5	21.5	50	76.92%	4	
556189	8.5	7	3.5	0	19	51	78.46%	4	
556430	8.5	7	3.5	0	19	51	78.46%	4	
556926	3	8.5	7.5	0	19	51	78.46%	4	
557214	8	6.5	3	1	18.5	54	83.08%	4	
556171	4.5	8	5	0	17.5	55	84.62%	4	
556874	10	0	7.5	0	17.5	55	84.62%	4	
557152	2.5	9.5	5.5	0	17.5	55	84.62%	4	
556646	7	8	2	0	17	58	89.23%	5	
508082	8	5	3	0.5	16.5	59	90.77%	4	
556301	6	6.5	4	0	16.5	59	90.77%	4	
556322	0	8	8.5	0	16.5	59	90.77%	5	
556588	6	7.5	3	0	16.5	59	90.77%	5	

556151	4	7	5	0	16	63	96.92%	4
556373	8.5	4.5	0	0	13	64	98.46%	4
556421	3.5	1.5	5	0	10	65	100.00%	4

한경훈/4월/기쁠GS/16회/1번	채점자
	윤영우

1. 전반적인 총평

국제상표등록출원 관련 논점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

(1) 설문 1

'재킷' 의 출원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관련 조문과 함께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

다만, '가죽제 지갑' 의 출원일과 관련하여 대체 규정을 누락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정상품의 일부에 대해서도 대체 효과가 인정되도록 마드리드 의정서 규칙이 개정되었으므로, 국내등록상표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지정상품에 대체가 적용될 수 있음을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2) 설문 2

배점이 22점으로 매우 크므로 모든 논점을 빠짐없이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타인 을의 선등록상표와의 상표 유사 판단을 두껍게 작성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외에도 검토할 거절이유와 방안이 많음을 고려했을 때, 길게 작성할 실익은 없어 보였습니다.

취소심판의 경우에도 설문상 특별히 포섭할 만한 사실관계가 없으므로, 간단히 청구할 수 없다고 작성하고 넘어가셨어야 합니다.

제38조 1항의 거절이유의 경우 대부분 누락하셨는데, 대체 규정이 충족되면 간단히 작성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3. 소결

설문 2는 배점이 매우 큰 문제였으므로, 각 무효사유별로 목차를 나누어 충분히 서술해 주셨어야 합니다. 모든 거절이유를 빠짐없이 균형 있게 작성하신 분들께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습니다.

설문 2와 같이 배점이 큰 문제는 다수의 논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답안 작성 전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악하고, 문제 옆에 작성할 논점을 간단히 표시해 두는 습관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경훈/4월/기쌀GS/16회/2번	채점자
	윤영우

1. 전반적인 총평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관련 논점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

(1) 설문 1

제출해야 할 출원서 및 첨부서류, 정의규정 및 출원인 적격 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대부분 관련 규정과 함께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

(2) 설문 2

34조1항12호 전단의 경우 누락하거나 결론을 반대로 내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성녹차'가 포함된 표장을 '녹차'에 사용하면 산지가 오인될 염려가 있으므로 상품을 '보성산 녹차'로 한정함으로써 극복이 가능합니다.

34조1항8호, 10호, 14호의 경우에도 결론을 반대로 내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각 규정에서 '타인'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3. 소결

작성해야 할 법조문이나 거절이유를 누락한 경우가 일부 있었습니다. 누락된 내용은 기본서에 표시해 두시고, 반복 학습을 통해 확실히 보완해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한경훈/4월/기쌀GS/16회/3번	채점자
	윤영우

1. 전반적인 총평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관련 논점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

(1) 설문 1

33조1항3호와 7호의 거절이유를 검토하고 그에 대한 조치로서 33조2항을 작성하는 설문이었습니다.

제3호와 제7호의 거절이유 판단은 대부분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 다만, 설문의 배점을 고려하면 사안 포섭을 조금 더 두껍게 작성하셨으면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33조2항의 경우 실사용상표의 사용실적 참작 가부에 대해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일부 있었습니다. 실제 단박대출 판례에서 문제된 논점이므로 누락하신 분들은 실제 판례를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2) 설문 2

상표권 침해인지 판단한 후에 그에 대한 조치를 작성하는 설문이었습니다.

침해 요건 중에서는 상표 유사 여부와 상표권 효력 제한 해당 여부가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포인트였으나, 상표적 사용 여부, 정당권원 유무 등 다른 침해 요건도 간단히 줄처리해 주면 답안의 완성도가 올라가 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관련 조문의 병기를 누락한 답안이 다수 있었습니다. 상표권 침해에 대한 조치는 자주 출제되는 영역이므로, 주요 조문은 사전에 암기해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소결

비교적 익숙한 논점들로 구성된 문제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안 포섭이나 목차 구성에서 다른 답안과 차별화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훈/4월/기쁠GS/16회/4번	채점자
	윤영우

1. 전반적인 총평

조치를 다각적으로 검토했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

(1) 설문 1

제34조 제1항 제20호, 제21호 등의 무효사유를 비중 있게 검토해 주셨어야 합니다. 무효사유 검토 시 요건을 누락하지 않도록 사전에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치로서 이의신청, 정보제공을 작성한 답안이 있었으나, 본 설문은 등록상표에 대한 조치를 묻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2) 설문 2

예상 거절이유로 35조1항 대신에 34조1항7호를 작성한 경우가 일부 있었는데, 타인 을의 선출원상표가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35조1항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조치로서 조약우선권주장출원을 누락한 답안이 많았습니다.

조약 당사국에서 상표권을 보유한 경우 조약우선권주장출원이 논점이 될 수 있으므로, 문제를 읽으면서 해당 사실관계는 미리 체크해 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갑은 재외자에 해당하므로 6조에 대해서도 간단히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3. 소결

어느덧 기쁠 GS 16회차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풀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처음인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많은 분들이 문제 4까지 충실히 작성해 주셨습니다.

지난 2개월 동안 주말마다 빠짐없이 나오셔서 답안을 작성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꾸준히 학원에 나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개월 동안 받은 점수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으나, GS 점수는 참고자료일 뿐 실제 시험 점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수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매 회차 누락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하여 다음 달 실전 GS에서 한층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3

[문제-1] Barbour (상표법은 이하 '법'이라고 한다.)

I. 설문(1)

1. 국제상표등록출원 의의·취지

기초상표·등록을 토대로 본국관청에서 국제출원을 통하여 마드리드 협정국에 출원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상표의 국제적 보호나 상표권 보호를 위한 취지로 출원인의 편의가 보장된다.

2.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일

(1) 국내단계의 경우 - 법 180조 1항·2항

국제등록된 국제출원은 국내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으로 보고 (법 180조 1항), 이때 국제등록일을 상표등록 출원일로 본다.(2항)

(2) 국제등록일

1) 의의

국제상표등록출원이 국제사무국에 접수되어 국제등록에 이르게 된 경우 지정국 각각 내에서 출원일로 인정하는 날이다.

2) 판단기준

① 국제등록출원을 한 날로 2월 이내 국제사무국에 도달되어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제등록출원을 한 날'로 인정되고

② 2월이 지나서 국제사무국에 접수·도달된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에 접수된 날'로 인정된다.

3. 사안

(1) 국제등록일 — 2025. 3. 10

甲은 2025.3.10에 국제출원을 하였고, 2025.4.10에 국제사무국에 접수된 바 2월 이내이므로 출원일로 인정된다.

(2) 국내 출원일 — 2025.3.10

甲은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지정하여 영역확장이 있은 이후인 바 상표법 180조 2항에 따라 국제등록일이 출원일로 인정된다.

4. 결론 — 2025.3.10

따라서 최초의 출원일로 인정되어 국제출원의 장점을 누릴 수 없게 되어, 취지상 적절하다.

II. 물음(2)

1. 논점

甲의 국제출원이 국내의 자기 선등록 상표와의 관계에서 대체의 인정 여부, 그의 효과사항이 있는지 검토한다.

2.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대체

(1) 의의 — 상표법 183조 1항 본문

국내등록 상표가 있는 경우에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한 출원인은 일정 요건 하에 국내의 출원일로 소급 받을 수 있다.

(2) 요건 — 상표법 183조 1항 각호

① 국제상표등록출원한 상표와 국내등록 상표가 동일할 것

② 국제등록 출원 상표와 국내등록상표 출원인이 동일할 것

③ 영역확장의 표기 (국제등록일)이 국내등록일 이후일 것

(3) 효과

국내 상표 출원일로 그 출원일이 소급된다.

(4) 결과

심사관이 직권으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러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원인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규 183조 4항)

3. 甲의 주장 반박 논리 – 대체 신청

(1) 상표 동일 여부 – 충족

국내에 등록 상표 'Barbour'와 국제상표등록 출원 건 甲의 상표 'Barbour'은 동일하여 인정된다.

(2) 출원인 동일 여부 – 충족

모두 甲으로 동일하여 문제되지 않는다.

(3) 시기적 요건 – 만족

① 甲 국내등록일은 '2023년 말'이고 ② 동일한 국제출원상표의 영역확장의 표기일, 즉 국제등록일은 '2025년 3월 10일'이기 때문에 ③ 그 후에 해당하여 요건이 만족된다.

(4) 소결 – '가죽제 지갑' 대체 가능

따라서 甲은 국내선등록 상표 출원일로 대체 지정상품인 '가죽제 지갑'의 출원일을 소급받아서 심사관의 상표 34조 1항 7호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다.

4. ㉮의 두 번째 조치 – 무효심판 청구

(1) 의의 – 法 117조

공익상, 하라있는 등록상표의 등록을 소급하여 소멸시킬 수 있다.

(2) 적부

法 117조 에서 요구하는 이해관계인은 법률상 불이익을 받을 염려, 받는 자 이므로 ㉮은 이에 해당하고, 다른 부적법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바 적법하다.

(3) 본안

무효심판을 위한 2의 등록상표 무효사유를 검토해야 한다.

5. 法 34조 1항 7호 거절이유 준부 – 적극

(1) 의의 – 취지

국내 선출원 등록상표와 유사범위의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선등록 상표권자와 수요자 혼동 방지를 위함이다.

(2) 상표 유사 여부 – 적극

1) 영어로 된 문자상표의 경우 – 判例

영어 문자상표의 경우 국내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하여 호칭되는 것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

2) 사안

① ㉮ 국내 선등록 상표는 'Barbour'로 국내 일반적인 영어 보급 수준에 의하면 '바버'로 호칭될 것이고 ②

2의 후음절 ※ 상표는 'BARBOURS'로 '바버스' 또는 '바버'로 호칭될 것인 바 양 '호칭이 유사하고 외관 차이가 나더라도 이를 극복하다 ③ 외관은 영문대문자와 소문자의 차이, 그리고 마지막 음절인 'S' 정도의 미세한 차이만 존재하여 거의 비슷하고 ④ 관념은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관념 없이 호칭이 동일한 유사상표인 바 유사할 것이므로 ⑤ 양 상표는 유사하다.

(3) 소결 – 거절이유 존재

양 상표는 '가죽제 지갑'과 '가죽제 가방'은 그 속성은 다소 상이하나 거래실정이 동일하여 유사한 상품인 바, 2 등록상표는 法 34조 1항 7호 거절이유가 있다.

6. 法 34조 1항 13호 거절이유 존부 – 2상표

(1) 의의·취지

국내외 상품의 ※ 특정인의 출처로서 인식된 상표와 동일·유사 상표로서 부정경쟁 목적을 가진 출원은 등록 받을 수 없다.

(2) 부정한 경쟁목적 판단기준 – 判例

부정경쟁목적을 판단할 때에는, 상표 인식도, 창작성의 정도, 상표 유사성, 상품 간의 견련성, 모방사실 유무, 당해 여부, 준비 사실, 거래실정 등을 고려한다.

(3) 사안 – 부정경쟁목적 인정

① 甲의 상표는 국내에서는 인식도가 없지만 2023년 당시

영국 내에서 甲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고 ② 이 상품은 유사하고, 상품도 유사하고 ③ 乙은 甲과의 교섭 시도 실패 이력이 있고 ④ 국내 권원을 알고 상품을 출원한 바 부정경쟁 목적이 인정된다.

7. 상표 34조 1항 21호 거절이유 존부 - 긍정

(1) 의의·취지

조약 당사국에 선출원 상표권자와 일정 신뢰관계가 있는 자는 신의칙에 의거, 유사범위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

(2) 사안 - 거절이유 존재

① 甲은 영국에 'Barbour'를 '가죽제 지갑'으로 등록 받았고 ② 이후 乙은 국내에 유사상표를 유사 상품에 출원하였다.

③ 乙은 영국에서 甲으로부터 의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던 자로서 국내 총판에 관한 양해를 받기 위한 교섭을 나눈 바 있어 '일정 신뢰관계가 인정'되고 ④ 甲의 국내 사용 권원을 알고서 이를 출원한 바 ⑤ 상표 34조 1항 21호 거절이유가 있다.

8. 결론

① 甲은 재심사청구를 통해 '가죽제 지갑'을 권리화할 수 있고

② 무효심판 청구를 통해 乙의 위 무효사유를 주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보호거절상황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끝]

[문제1-2] 목차

I. 설문(1)

1. 쟁점관련 출원 유형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1) 의의 - 상표법 2조 1항 6호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 등을 하는 자가 소속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이다.

(2) 취지

이는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고 그 사용 주체들의 신용을 같이 축적하게 함으로써 수요자 보호까지 도모하기 위함이다.

(3) 사안

甲은 보성군에서 녹차를 생산하는 업자들이 설립한 법인으로 '보성'이라는 지리적 표시를 등록받고자 하는 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형식으로 출원하여 상표법상 보호받을 수 있다.

2. 출원의 절차.

(1) 상품의 지정 - 서비스 제외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 서비스를 제외한 상표법상 상품에 대하여만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다.

(2) 단체표장 정관 - 상표법 36조 3항

단체표장을 등록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정한 정관을 단체표장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3) 지리적 표시 보충 — 商 36조 5항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으려는 자는 지리적 표시 정의에 일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3. 등록 가부 — 2쟁점

(1) 정의 규정 위반 — 소극

① 商 2조 1항 4호에 따를 때, 전라남도 보성군은 해양성 기후와 대륙성 기후가 맞물리고 사질양토에 강우량은 많고, 물이 잘 빠지는 토양으로 되어 있는 등 그 특유의 품질에 ② 본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특성이 보성군에서 기인한 바 지리적 표시 정의에 부합한다.

(2) 출원인 적격 위반 — 소극

① 商 3조 2항 본문에 따를 때,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 등을 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② 개정법에서 '만으로 를 삭제' 함으로써 甲 조합 유통업자가 공동으로 생산하더라도 문제되지 않는 바 출원인 적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 원칙적 등록 가능

따라서 기타 다른 거절이유가 없는 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 받을 수 있다.

Ⅳ. 설문(2)

1. 인용표장의 적격 충족 - 긍정

① 甲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등록받은 바 있는

② 선출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서 적격이 있는바

③ 판단 시의 적격요건을 충족한다.

2. 지리적 출처 혼동 염려 충족 - 긍정

(1) 판단기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등록된 경우는 출원된 상표라도

단계에서 지리적 출처를 혼동할 염려가 있는지를 본다.

(2) 사안 - 혼동 존재

① 乙의 출원상표는 '오리온 보성녹차'이고 '오리온' 부분은

지리적 표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부분이고 ② '오리온'

의 결합으로 인하여 '보성녹차'의 지리적 출처표시로서의

식별력이 감소되지 않는 바 ③ 따라서 상품 유사 판단

시 요부관찰 기능을 하여 ④ 선출원 등록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인 甲의 '보성녹차'와의 관계에서 ⑤ 충분히

지리적 출처를 수요자들이 혼동할 염려가 존재한다.

3. 동법 34조 1항 8호 거절이유 충족 - 소극

(1) 의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으로 선출원된 등록된 경우에 유사 범위 내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은 등록받을 수 없다.

(2) 사안

① 甲 선등록 지리적 표시를 전체 포함하나 乙 출원된 상표의 경우 지리적 표시 혼동 염려가 존재하고 ② 상품은 동일하나 ③ '타인'의 범위에 그 지역의 생산업자 모두가 해당하는 乙이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④ 결국 상표 34조 1항 8호 거절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4. 상표 34조 1항 10호 거절이유 존부 - 소극

(1) 의의

주지한 지리적 표시 출처와 혼동할 상품은 등록받을 수 없다.

(2) 사안

① 위 상표 34조 1항 8호와 마찬가지로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 乙은 ② 甲의 지리적 표시가 주지하고 상품이 동일하더라도 ③ 상표 34조 1항 10호 거절이유가 없다.

5. 상표 34조 1항 14호 거절이유 존부 - 소극

乙은 비록 특정인의 지리적 표시로 인식된 甲단체 단계에서 그 혼동 염려가 존재하더라도 '부정한 경쟁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거절이유가 없다.

6. 결론 - 등록 가능

따라서 거절이유가 없어 등록받을 수 있다. [끝]

9

[문제-3] 단박대출

I. 설문(1)

1. 논점.

甲 출판상품가 ㅎㅌ 33조 1항 3호·7호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는지와, 관련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살핀다.

2. 식별력 존부 — 소극

(1) ㅎㅌ 33조 1항 3호 의의·취지

지정상품의 기술적 표정은 등록받을 수 없다. 자타 상품식별력과 독점적 운성이 없어 수요자 보호를 위함이다.

(2) ㅎㅌ 33조 1항 7호 의의·취지

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품의 경우는 등록받을 수 없는 보충적 규정이다. 자타상품식별력과 독점적 운성이 없기 때문이다.

(3) 식별력 판단기준 — 判例

지정상품과의 관계, 표정의 관념, 거래실정을 모두 종합하여 식별력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받을 수 없다.

(4) 사안

1)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따른 관념

'단박대출'은 '대부업'과 관련하여 빠르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업 또는 신속하게 바로 어떠한 절차로 거치지 않고 물리고 따지지도 않고 대출을 바로 해주는 대출 서비스업의 관념을 남긴다.

2) 거래실정 종합

① 대출과 관련하여 거래실정상 신용을 인정받아야 하는 등 그 과정이 까다롭고 오래 걸리고 번거로운 점, 일반인이 보기에 대출은 원래 거부감이 들고 위화감이 느껴지는 등을 고려해 봤을 때 ② '단박대출'은 빠르게 신속하게 간편하게 빌려준다는 의미로 거래실정상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③ 지정상품의 '품질을 나타내는' 표장으로 식별력이 없다.

(5) 소결 – 식별력 부존재

따라서 상표법 33조 1항 3호·7호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3.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1) 의의 – 상표법 33조 2항

출원인의 표장이 사용에 의하여 수요자에게 출처로 인식되는 등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예외적으로 등록을 허용한다.

(2) 판단방법 – 엄격 해석

식별력이 없는 상표를 예외적으로 보호해주는 취지의 규정인바 '엄격하게' 그 요건을 판단한다.

(3) 요건 1 – 식별력 충족

일반 소비자들이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충족한다.

(4) 요건 2 – 특정인의 출처로 식별

1) 인식도 판단기준 – 엄격 해석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인정을 위한 인식도의 판단

기준은 광고·매출실적, 사용기간, 횟수·방법 등을 종합 고려한다.

2) 실사용표장 동일성 여부 - 判例

출원상표와 '사회통념상 동일'한 실사용표장의 사용 내역은 그 인식도 측정 판단에 고려되는 요소로 평가된다.

3) 부가 사용의 경우 - 判例

출원상표에 다른 부분을 부가해 사용한 경우 동일성·독립성·분리인식이 가능한 부분은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평가된다.

4) 사안

① 甲 실사용상표 1,2는 '단백과자'에 '인어멋' 문자는 '콘과' 부분이 결합되어 사용되었는데 ② '단백과자' 부분의 '동일성'은 인정되고 ③ 거래사회상 실사용표장 그대로만 사용되었다는 특별한 사정도 없고 도형이 불가분적이지도 않은 바 '독립성'을 가지고 '분리인식'된다고 판단된다.

④ 이러한 실사용표장은 방송·언론 광고 등을 통해서 전국적 다수 점포에 판매되어 10만 건이 팔렸고 2 광고비로 500억 원을 지출한 바 ⑤ 특정인의 출처로 식별할 수 있는 인식도 요건 만족에 도움이 된다.

5) 소결

실사용표장 동일성을 통해 인식도 요건이 만족된다.

(5) 결론 -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주장 가능

① 甲은 출원상표를 2024년경 사용한 이력이 있고

② 동일 상표를 동일 상품에 출원한 바 주장 가능하다.

4. 설문의 해결

본사안의 상표법 33조 1항 3호~7호 해당한다는 판단은 타당하다, 상표법 33조 2항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주장하여 등록을 도모할 수 있다.

6.5

Ⅱ. 설문(2)

1. 논점

甲이 등록한 상표권에 대하여 이유런 항변 사유도 없는 乙의 그 보호범위 내 사용권리가 문제가 된다.

2. 상표유사 여부 — 긍정

(1)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효과 — 判例

등록상표가 상표법 33조 2항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이유로 등록이 된 경우 이 식별력 취득의 효과는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까지 미친다.

(2) 상표유사 판단 일반원칙 — 判例

양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일반수요자를 기준으로 하여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출처의 혼동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요부 판단의 법리 — 判例.

결합상표에서 출처표시로 다른 기능을 가진 부분을 요부로 추출·비교하여 합리적인 전체관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4) 2 상표 요부 – '단박대출'

① 2상표의 '단박대출' 부분은 甲의 출처로 식별된 상표의 식별력 취득의 효과가 미쳐서 식별력이 인정되고 ② 대출, 100% 여성전용 · 론 부분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서 식별력이 없거나 약하여 ③ 상대적인 식별력은 '단박대출'이 높고 ④ 2 사용상표가 일체로서만 결합하여 사용되는 거래실정도 보이지 않는 바 ⑤ 2 비중도 적지 않아 요부는 '단박대출' 부분이다

(5) 유사 여부 – 긍정

① 甲 상표와 2 상표의 요부는 외관 · 호칭 · 관념이 동일한 유사 상표로서 ②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6) 소결 – 침해

양 상표 유사 · 상품 동일 · 상표적 사용인 바 침해가 성립한다

3. 상표법상 조치

(1) 민사상 조치

1) 침해금지청구 – 법 107조

등록상표로 침해하는 자에게 상표권 보호를 위해 2 사용을 금지 · 예방 청구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청구 – 법 109조

고의 · 과실로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게 2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신용회복청구 - 동법 113조

고의·과실로 상표권을 침해하여 경제·신용에 손해를 가한 경우 법원에 그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2) 형사상 조치

1) 침해죄 고소 - 동법 230조

고의로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게는 7년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2) 몰수 - 동법 236조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게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품·포장·상품 등이 몰수된다.

(3) 기타조치

침해금지 가처분·가압류 등을 행사할 수 있다. [끝]

55

[문제-4] 상표 X

I. 결론(1)

1. 무효심판 - 동법 117조

공익상 해가있는 상표의 등록을 소급하여 소멸시킬수 있다.

2. 적법

(1) 이해관계인 여부 - 判例

상표권자로부터 법률상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자는 이해관계가 있다.

(2) 사안 — 丙 인정

① 丙은 국내에 Y상품을 수입하여 X상표를 사용하는 자로서 ② 甲 등록상표의 유사범위 사용으로 침해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어 ③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3) 소결 — 각하불가

기타 각종 부적법 사유가 보이지 않아, 각하불가하다.

3. 상표 34조 1항 20호 무효사유 존부 — 긍정

(1) 의의 - 취지

국내사용·인식여부 관계없이 일정관계가 있는자는 유사범위내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2) 신의관계 존부 — 긍정

① 乙은 甲과 동업관계로 甲의 상품을 일본에서 수입하여 한국에서 판매 하였고 ② 출원당시 계약이 파기되었더라도 判例에 의하면 신의관계는 여전히 존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③ 乙은 甲과 신의관계가 있다.

(3) 甲 국내사용 인식여부 — 긍정

甲은 일본 내에서만 상품과 상표를 사용하고 있지만 국내에 수입되었다, 국내 사용 준비를 해왔다.

(4) 소결

따라서 유사 상표 · 유사 상품 범위의 출원을 한 乙은 상표 34조 1항 20호 무효사유가 있다.

4. 상표34조 1항 21호 무효사유 존부 - 긍정

(1) 의의·취지

조약당사국 상표권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품의 경우에 그 상표의 취지에 반하는 범위내에서 동의가 없는 한 등록받지 못한다.

(2) 조약당사국 등록 여부 - 긍정

甲은 일본에 2026.5.7 상표 X를 상품 Y에 대하여 출원 후에 등록받았다.

(3) 甲 동의 여부 - 소극

甲은 乙의 국내출원에 동의한 바가 없다.

(4) 소결

乙의 국내 출원은 조약상 신뢰관계가 다르게 있던 경우로 인정되므로 법34조 1항 21호 위반이다.

5. 결론 - 무효심판 청구

X상표가 인식요건을 충족한 사정은 없어 기타 무효사유는 존재하지 않는 바, 甲은 위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 乙 등록상표를 무효화 시킬 것이다.

Ⅱ. 설문(2)

1. 상표35조 1항 의의·취지

선출원된 동일·유사상표와 동일·유사상품에 출원된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다. 선출원된 상표의 보호를 위함이다.

2. 상표 35조 1항 거절이유 존부 - 적극

① 乙의 출원 계속 중 甲이 국내에 유사한 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출원한 경우 ② 상표 34조 1항 7호 위반으로 등록받을 수 없을 것이다.

3. 甲의 조치 1 - 대응책

(1) 상표 35조 3항

선출원의 지위는 출원 계속 중인 상표에 만 존재한다.

(2) 정보제공 - 상표 49조

누구든지 출원 계속 중인 상표에 대하여 심사관에게 증거와 함께 거절이유를 제공하여 등록을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공익성 심사의 담보를 위함이다.

(3) 이의신청 - 상표 60조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로 30일 내 이의신청을 통해 거절이유를 주장 입증하여 출원상표의 등록을 저지할 수 있다.

(4) 사안

乙의 출원상표는 甲과의 관계에서 상표 34조 1항 20호 거절이유가 있는 바 이를 주장 입증하여 선출원 상표를 소멸시켜 후출원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

4. 甲의 조치 2 - 대안책

(1) 출원 양수

그의 국내출원은 양수하여 거절이유 극복이 가능하다.

(2) 화해-조정.

그리 화해-조정을 통해 거절이유 극복이 가능하다.

(3) 상표공존동의 제도 – 도입 34조 6항

유사범위 선출원 자의 동의를 받아 그 등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5. 甲의 조치 3 - 2국의 조치

① 甲은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재외자인 바

② 그의 출원도 절차진행을 취할 수 없이 반려될 수 있기 때문에 ③ 국내 대리인을 선임하여 (상표 재외자) 그 출원을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하여백)

※ 추가작성의 경우 [ ]에 "계속"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5

문제-1

1. 물음(1)

1.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자위 - 상표제180조 제1항

마드리드 협정서에 따라 국제등록된 국제출원은로 대한민국을 지정국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이 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로 본다.

2. ~~국제등록일~~ 출원일 특정

(1) 상표 제180조 제 2항

국제등록일은 이 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일로 본다.

(2) 국제등록일 - 협정서 제 3조 제4항

① 본국관청에 국제출원서 접수된 날이 국제등록일이 되나, ② 그날로부터 2월 측에 국제사무국에 접수된 경우, 국제사무국이 접수된 날이 국제등록일이 된다

(3) 사안

甲은 2021. 3.10 일 국제출원하였고, 2021. 4. 10 국제사무국에 접수하였다.

甲이 본국관청에 국제출원서 접수한 날로부터 2월 이내 국제사무국이 접수되었으로 甲의 출원일은 2021. 3.10 일이다.

3. 대체 가능 여부

(1) 협의 - 상표 제183조 제1항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국제상표등록출원이 국내 상표 출원일에 출원된 것로 보는 제도이다.

(2) 요건

① 국제등록명의인과 상표권자가 동일해야 하며, ② 상표가 물리적으로 동일하고, ③ 국제등록일이 국내등록 상표의 등록일 이후여야 한다.

(3) 절차

심사관은 대체 신청이 없어도 각 요건을 만족하면 직권으로 대체 여부 결정해야 한다.

(4) 효과

중복되는 상품에 출원일 소급효 인정된다.

(5) 사안

① 국제등록명의인과 상표권자는 모두 甲으로 동일하고, ② 상표는 "Baboar"로 물리적으로 동일하며, ③ 甲의 국제등록일이 2023.3.10로 甲의 국내 등록 상표의 등록일인 2024.9.1로 보다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심사관은 직권으로 대체여부 결정해야 하고, 甲의 지정상품 중 '가죽제 지갑'에 대해서만 대체효과가 부여된다.

(6) 결론

甲의 지정상품 중 '가죽제 지갑'에 대해 대체가 적용되며 출원일이 2023.3.1로 소급한다.

나. 설문 (1)의 해결

甲의 국제상표등록출원은 '가죽제 지갑'에 대해서 출원일이 2023.3.1로 소급, '가죽 재킷'에 대해서는 2023.3.10이 출원일이다.

n45

Ⅱ. 설문 (2)

1. 가거절이유 타당성 - 적극

~~1. 가거절이유 1. 고촛제 34조 제1항 제7호~~

(1) 의의 및 취지 - 고촛제 34조 제1항 제7호

타인의 선출원된 등록상표와 출원상표가 동일·유사 범위 내라면 등록이 불가하다.

(2) 상표 동일·유사 여부 - 적극

1) 문자상표 - 쉬께

문자상표의 경우, 유사여부 판단할 때 호칭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주로 어두부분 중심으로 판단한다.

2) ~~甲상표~~ 외관

甲상표는 "Barbour", 乙상표는 "BARBOURS"로 철자 S와 대·소문자를 제외하고는 외관이 상당히 비슷하다.

3) 호칭

甲상표는 우리나라 영어보급수준으로 보아 "바버", 乙상표는 "바버스"로 호칭될 것이고, 문자상표의 경우 어두부분의 발음에 ~~강세가~~ 강세가 있으므로 각 상표의 어두인 "바버"는 서로 동일해 호칭 비교했을 때, 양 상표 유사하다.

4) 유사 판단

甲상표와 乙상표는 각각 특별한 관념 형성되는 사정도 없고, 외관·호칭 유사하므로 양 상표 유사하다.

(3) 상품 동일·유사 여부 - 적극

甲 지정상품 중 2보다 후출원 된 재킷과 2의 지정상품 가죽제 재킷은 그 상품의 원료, 소재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사회 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므로 양 상품 동일하거나 적어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4) 2의 선출원등록상표 여부.

① 甲의 지정상품 중 가죽제 지갑에 대해서는 선출원이 인정되지 않고,

② 甲의 지정상품 중 재킷에 대해 선출원이 인정된다.

(5) 소결

심사관의 가거절이유통지는 출원일체의 원칙에 따라 甲의 지정상품 중 재킷에 대해서만 거절이유 있더라도 적법하다.

2. 논점정리

甲은 2의 등록상표에 대해 무효심판 청구하거나, 출원의 분할을 통해 ~~가죽제~~ 자신의 국제출원의 등록을 도모할 수 있다.

3. 2 등록상표 무효사유 검토. ~~[illegible]~~ 一호표 제34조제1항 제13호 (적극)

(1) 호표제 34조 제1항 제 13호.

국내 또는 외국에서 특정인의 출처로 인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 경우, 등록받을 수 없다.

(2) 특정인의 출처로 인식 여부 - 적극

甲은 영국의 의류 회사로 뛰어난 품질과 정통성을 인정받았고, 甲 상표 "Barbour"는 비록 국내에서는 크게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2023년 영국 내에서는 의류 브랜드로 널리 알려져 있었으므로 적어도 주지하다는 것으로 보아 영국에서 특정인 甲의 출처로 상표가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 나라에서만 인식도 충족해도 특정인의 출처로 인식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부정한 목적 - 적극

乙은 甲으로부터 국내 총판에 관한 권리를 양수받기 위해 교섭을 하였으나, 실패한 사정이 있고, 甲의 상표가 ~~사업성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 상표를 출원했으므로 乙에게 부정한 목적이 인정된다.

~~(4) 상표 유사 여부 - 적극~~

~~앞서 논의한~~

(4) 소결 - 제13호 무효사유 존재

乙은 유사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했으므로 제13호에 해당한다.

영국에서 ~~두~~ 甲의 출처로 인식된 상표와

4. 乙의 무효사유 검토 - 크로제 34조 제1항 제21호 (적극)

(1) 의의 및 취지

존약당사국에 등록된 타인의 상표를 동일 유사 범위 내에서 신의관계 등이 존재하는, 혹은 존재했던 자가 출원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2) 계약관계 및 신의관계 존재 여부 - 적극.

乙은 영국에서 甲으로부터 의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던 자로 타인에

해당하고, 국내 출판에 관한 권리 양수를 위해 甲과 교섭을 시도했으나, 이에 실패하였다. 그 후 乙은 甲의 국내시장 진입을 인지하여 상표 출원한 것으로 乙은 甲과 신의관계에 있는 자라고 볼 수 있다.

(3) 소결

甲 상표는 영국에 등록된 상표로 (신의관계에 있던) 乙이 유사상표를 유사상품으로 출원한 것은 제21호 거절이유에 해당한다.

5. 무효심판 - 소송 제117조.

甲은 乙의 선출원등록상표에 제34조 제1항 제13호, 제21호의 거절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무효심판 청구해 乙의 상표 소멸시킬수 있다.

6. 상표권 양수 포기 권유.

甲은 乙에게 무효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상표권 양수 및 포기를 권유할 수 있다.

7. 출원의 분할 및 보정

(1) ~~[illegible]~~ 보정 가부 - 제1항자 적극

甲은 가거절이유통지를 받았으므로 제40조 보정이 가능하나, 상표의 보정은 허용되지 않고 상품 보정만 가능해 ~~[illegible]~~ 재킷을 삭제하고 후술할 ~~(2) 분할 가부 - 적극~~ 분할 절차 밟을 수 있다.

(2) 분할 가부 - 적극

甲은 국제상표 등록 출원도 분할이 가능하므로 거절이유 있는 상품 재킷을

분할해 빠른 등록을 도모해볼 수 있다

-끝-

5

문제-2

ㄷ. 설문 (1)

1.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의의 및 취지 - 소초제2조 제1항 제6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 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또는 소속 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상품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단체표장이다.

2. 첨부서류.

(1) 소초 제36조 제3항

지리적 ~~단체표장~~ 표시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소초 제36조 제5항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일치함 증명 가능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객체적 요건

(1) 지리적 표시 정의 - 소초 제2조 제1항 제4호

상품 특성·품질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 제조 또는 가공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정의.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 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 혹은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해야 한다.

4. 정의규정 ~~상사기준~~ <(1) 상사기준

공통 운영, 출원인 명칭, 해당 지역 연상시키는 범불령 제외하고 지리적 표시안으로 구성되거나 상품명 결합한 것만 정의규정 만족한다.

(2) 사안

지리적 표시 나타내는 보성과 상품명 녹차를 결합한 상품로 정의규정 만족한다.

5. 출원인 적격 — 크롯제3조 제2항 괄호.

~~2~~ (1) ~~크롯제~~ 의의

지리적 표시 사용할 수 있는 상품 생산. 제조.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이 등록받을 수 있다

(2) 사안

녹차를 보성군에서 생산하는 업자들과 유통하는 자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甲이 출원했으므로 적격 인정된다.

6. 설문(1)의 해결

① 적절한 출원의 유형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등록가능성 — 적극

출원인 적격 만족하고, 정의규정 유반 사항도 없고 지리적 표시는

제 33조 제1항 제3호 산지나 제34조 제1항 제4호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아니므로 거절이유 없어 등록가능하다.

3.5

ㄷ. 설문(2)

1. 제 34조 제1항 제 8호 해당 여부 — 적극

(1) 의의

선출원에 의한 타인 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품로 동일한 상품에 등록 불가하다.

(2) 상품 유사 여부. — 적극

1) ㉮ 상품 ~~여부~~ 보성녹차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의 경우 지리적 표시를 나타내는 보성이 여부이다.

2) 2상품 여부 — 보성 녹차

오리온은 식별력이 없으며 여부가 될 수 없고, 그 결합으로 보성녹차의

식별력 줄지도 않으므로 보성이 여부이다.

3) 유사 판단 — ~~적극~~ 유사.

~~각 상품 여부를 비교했을 때 녹차는~~ 2상품 여부 '보성녹차'와

㉮ 상품 '보성녹차'는 유사하므로 양 상품 유사하다.

(3) 소결

제 8호에 ~~호~~ 해당한다.

2. 제 34조 제 1항 제10호, 제14호 해당 여부 - 소극

2은 보성군에서 녹차를 생산하는 업자로 ~~그에~~ 정당업자에 해당하므로

그에게는 甲 ~~상품~~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효력이 미치지 않아

그은 본 호 거절이유가 없다.

3. 설문(2)의 해결 - 등록 불가

~~甲~~ 그의 상품는 제 34조 제1항 제 8호 거절이유 있으므로

등록받을 수 없다

- 끝 -

75

문제-3

C. 설문(1)

1. 제 33조 제1항 제3호 해당 여부 - 적극

(1) 의의 및 취지

상품은 성질을 나타내는 표시만으로 된 표장은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없어 등록이 불허된다.

(2) 기술성 판단기준 - 쉬웠

기술성은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구체적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3) 사안

① 甲이 출원한 상품 '~~단백~~ '단박대출'은 바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때 해석되어 당업에 대출 가능하다는 관념이 형성될 수 있고,

② 지정상품인 대부업라는 관계에서 이러한 관념이 더욱 더 강해질 것이고, 바로 대출 가능하다는 점이 직감될 수 있고, ③ 또한 대부업에서 '당박', '대출' 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포장을 주로 사용하는 것이 거래실정이다.

(4) 소결

A의 출원상표는 제 3호의 거절이유가 있다.

2. 제33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 - 적극

(1) 이의 및 취지

원칙적으로 식별력이 없거나 독점적응성이 결여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2) 사안

1) 식별력 - 소극

A의 출원상표 중 '당박'은 대부업라는 관계에서 식별력이 인정되기 어렵고 '대출'도 식별력이 없으며, 이들이 결합으로 새로운 식별력이 형성되지도 않는다.

2) 독점적응성 - 소극

~~당박~~ '당박'이라는 단어나 '대출'이라는 단어는 대부업라는 관계에서 누구에게 독점시킬 수 없는 일반적 표현이다.

(3) 소결

A의 출원상표는 제 7호의 거절이유 있다.

3. 심사관 정당 거절이유 - 적극

심사관의 제3호, 제7호 거절이유 판단은 타당하다. 이에 대해 甲은 제33조 제2항 주장 사료할 수 있다.

4. 제 33조 제2항 주장 가부 - 적극

(1) 판단 및 취지

출원인이 출원 전에 사용한 상표가 특정인의 표지로 식별될 수 있게 되었다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인정되어 등록받을 수 있고, 이는 보호적으로 식별력 없는 상표를 예외적으로 등록해주는 것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2) 특정인의 표지로 식별 여부

1) 판단기준 - 수요자

사용기간, 횟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2) 실사용 상품 확장 가부 및 범위 - 유사성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표의 사용이라면 식별력 취득에 도움이 되는 요소이고, 그 범위는 출원상표와 동일하거나 동일성이 있고, 독립성을 유지하며, 불리인식 가능하다면 판단에 고려 가능하다.

(3) 사안

① 甲의 실사용상표

甲의 실사용상표는 '인터넷 단박대출', '간편 단박대출'로 이다.

② 동일성 여부 - 적극

甲의 실사용 상표 중 '인터넷', '전화'는 한 표지로 이를 결합해 새로운 관념 형성 안되고, 여전히 '단박대출'은 독립성 유지하여 분리 인식 가능하므로 실사용 상표 실적을 ~~특~~ 식별력 취득 판단에 고려 가능하다.

③ 식별력 취득 여부 — 적극.

甲은 직접대출방식과 관련해 ~~단백~~ 단박대출이라는 표장을 사용했고, 실사용상표들을 사용해 반복적으로 대출방식에 관하여 10만건의 광고를 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대부업의~~ 甲 실사용상표 실적을 출원상표의 실적으로 보아 식별력 인정할 수 있다.

(4) 소결

甲은 제33조 제2항 주장 가능하다.

4.5

II. 설문(2).

1. 침해 성립 여부 - 적극

(1) 침해 의의

~~상표~~ 등록상표와 동일·유사 범위 내 사용은 침해이다.

(2) 상표적 사용 여부 - 적극

乙은 그 상표를 상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3) 상표 유사 여부 - 적극

~~1) 그 상표 요부 — 단백 단박대출~~

1) 유사판단 원칙 - 쉐쉐

상품의 외관·호칭·관념 중심으로 전체적·이격적·객관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2) 등록 전 식별력 취득 - 쉐쉐.

기술적 표장이 제33조 제2항으로 등록되었다면 상품권자는 타인이 동일·유사 상품을 동일·유사 상품에 사용하는 것 금지할 수 있다.

3) 사안

① 甲의 상품 단박대출은 식별력을 취득했고, 乙이 동일한 '대부업' 서비스에 사용하는 상품 중 甲상품과 동일성 있는 단박대출 부분에 식별력 취득의 효과가 미친다.

② 대비

~~甲 상품과~~ 甲상품과 乙상품을 비교하면 '단박대출' 부분이 동일하므로 양 상품 유사하다.

(4) 효력제한 사유. ~~그 것제~~ - 소극

甲이 제33조 제2항에 따라 등록받았다면, 효력이 미치므로 乙은 그 동 90조 제1항 제2호 효력제한 사유 주장 불가하다.

(5) 소결

乙은 甲 상품권 침해한다

2. 甲의 조치

(1) 민사상 조치

甲은 乙에게 ~~쿼~~ 침해금지청구 (그 동 제 107조), 손해배상청구 (그 동 1109조),

신용회복청구 (상표제113조)가 가능하다.

(2) 형사상 조치

甲은 乙에게 침해죄 (상표제230조)로 고소 가능하다.

— 끝 —

4

문제 - 4

2. 설문 (1)

1. 우선심판 - 상표제117조 < (1) 의의

공익상. 무효사유가 있는 상표권은 소멸시켜야 한다.

(2) 인용상표 소멸의 취급.

무효사유 불문하고 인용상표를 소멸시켜 등록을 도모할 수 있다.

(3) 상표제34조 제1항 제20호 - 적극

1) 의의

계약관계·거래관계에 있는 자가 타인의 사용 준비를 알면서 동일·유사 범위 내의 출원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2) 제3자가 국내 판매한 경우 - 유통시킨

미사용상표 권리자가 유통됨을 전제로 수출하여 그대로 국내 거래에서 판매되었다면 유통시킨 제3자도 타인에 해당한다.

3) 사안

① 乙은 甲과의 판매 계약으로 수입하여 한국에서 판매하였고,

② 乙이 한국에 X 상표를 출원하지 않은 것을 알고 출원하였으므로

2라 甲은 선의 당사자가 ~~인정된다~~. 인정되고, 甲은 2라 계약 파기 후 국내에서 사용 준비를 해온 타인에 해당한다.

③ 2은 甲의 ㅂ 상품과 유사한 Y'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X와 유사한 X' 상표를 출원하였으므로 ④ 제20호의 거절이유가 있다.

(4) 소결

제 20호 거절이유 있으므로 소멸시킬 수 있다.

~~2. 상표등에서 제출~~

2. 상표권 포기 또는 양도 권유

곧 甲은 2에게 상표권 포기 또는 양도를 권유할 수 있다.

I. 설문(2)

1. 예상 거절이유 - 상표법 제34조 ~~<(1) 의의~~

타인의 선출원 상표와 동일·유사 범위 내 출원은 등록받을 수 없다.

(2) 사안

甲이 한국에서 Y상품에 X상표를 출원한다면 제 34조에 해당한다.

2. 이의신청, 정보제공. (상표법 제60조, 제49조)

(1) 의의

누구든지 심사 협력을 위해 이의신청하거나 정보제공할 수 있다.

(2) 사안

甲은 상표관리인 선임 후 2 출원에 대해 제34조 제1항 제20호를 이유로 이의신청,

정보제공할 수 있다

3. 조약우선권 주장 출원 - 소곳제 46조

(1) 의의

조약당사국에 출원 후 6月 이내에 대한민국에 출원하면 제35조 적용 시 당사국 출원일을 국내 출원일로 보는 제도이다.

우선일부터

(2) 사안

~~근은~~ 甲은 2026. 2.14 일본 출원을 기초로 국내에 상표관리인을 선임한 후 6月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조약우선권 주장 출원을 할 수 있다.

재외자이므로

4. 공조동의서 제출

~~근은~~ 甲은 2의 출원상표와 유사범위 출원이므로 2의 허락을 받아 공조동의서 제출이 가능하다.

5. 상표권 포기·취하·양도 권유

甲은 2의 상표권에 무효사유 존재이므로 상표권 포기·취하·양도를 권유할 수 있다.

6. 심사절차 중지요청 - 소곳제 70조 1항

甲은 거절결정 유보를 위해 심사절차 중지 요청할 수 있다

-이하여백-